

『구미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2006년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본격적인 가동과 기존의 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이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에 대행·관리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 (안 제11조 제2항)
- 나. 관리주체의 수수료 납부일을 익월 15일까지로 규정 (안 제11조제3항)
- 다.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시 공가율 2% 적용 규정 신설 (안 제11조 제4항)
- 라.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자
 - 가족이 동일번지 내에서 세대분가 한 사실상 동일가구인 세대
 -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와 이중 부과되는 세대
- 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
 - 객실·객석면적 : 61㎡이상 100㎡미만 ⇒ 61㎡이상 125㎡미만
- 바. 용어 변경에 따른 적용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류 폐기물

4.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2006년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대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납부일을 관리비 납부 마감일에서 익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수료 부과시 공가율 2%를 감액 부과 적용토록 하였으며
- 또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실제로 수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에 대해 감면 조치토록 하며 또한 가족이 동일 번지 내에서 세대 분가한 사실상 동일 가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